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3호, 2023.0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설립인가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 기관 확대(안 제3조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밖에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부동산개발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면제 기관으로 추가함.

나.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규정(안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는 절차를 추가함.

다.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 삭제(안 제22조)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의 규정을 삭제함.

라. 민감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
공사

1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설
립 근거 법령에 따른 부동산개발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제21조의 제목 “(협회의 설립인가)”를 “(협회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
다.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
회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22조”를 “법 제29조제5항의”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2조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① (생 략)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 -----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 「 <u>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한국자산관리공사</u>
<u><신 설></u>	14. 그 밖에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공공기관 중 <u>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부동산개발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u>협회의 설립인가</u>) <u>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u>	제21조(<u>협회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u>)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u>협회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협회 설립인가의 취소) 국
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
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
우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 또
는 조사·검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6.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
관의 내용 중 제6호부터 제10
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
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
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22조</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u>법 제29조 제5항의</u> ----- ----- ----- ----- -----. ③ (현행과 같음)
<u>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① (생략) ②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u>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u>」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u>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u>」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u>제19조제1호</u> -----. 1.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438